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7. 3. 28.  
행 정 위 원 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 26)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

###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제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 (안 제1조, 제5조, 제13조)
- 기금 운용 심의사항 추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3호)
-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위촉토록 함(안 제7조제3항,4항)

- 위촉위원회에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안 제8조)
-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 (안 제10조제1호)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완섭)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 그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을 근거로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및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용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4. 修正案 要旨

- 안 제6조 기금은 수해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장비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해발생 지역 내 응급복구 사업 등 재난예방과 복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 기금용도는 “시설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6조제7호, 제8호 등 다수 중복된 문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추어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치수방제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로 하고
- 안 제6조 제7호의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을 삭제하고, 동조제8호의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등에 필요한 사업”을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하고, 동조제9호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기금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하고
- 안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의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 안 제7조의2를 삭제하고
- 안제7조제4항의 “치수과장”을 삭제하고
- 안 제8조 제4항의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 안 제10조제1호의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 안 제11조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하되
- 제11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4호
----------	-----------

제안년월일 : 2007. 3. 26 .

제안자 : 윤준용 위원

## 1. 수정 이유

- 안 제6조 기금은 수해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장비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해발생 지역 내 응급복구 사업 등 재난예방과 복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 기금용도는 “시설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으며
- 안 제6조제7호, 제8호 등 다수 중복된 문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추어 “행정국장”을 “건설교통 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치수방재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주요 골자

- 안 제6조 제7호의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을 삭제하고, 동조제8호의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등에 필요한 사업”을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하고, 동조제9호의 “기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기금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하고
- 안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의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하고,

- 안 제7조의2를 삭제하고
- 안 제10조제1호의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 제11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 치·운영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 치·운영 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의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 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 -----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의회"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말한 다. 2. "구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 회계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위원회"----- -----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 무회계 규칙」 ----- -----.	제2조(정의)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재난및안전관 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 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 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 -----. ② -----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 -----.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6. (생략)</p> <p>7.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p> <p>8.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p> <p>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lt;삭제&gt; (현행 7호를 삭제)</p> <p>8.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p> <p>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p>
<p>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p> <p>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p> <p>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된다.</p> <p>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영등포구 소속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p> <p>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위원회 ----- -----.</p> <p>③----- 행정국장 ----- 자치행정과장 -----.</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p> <p>2.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p> <p>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개정안 5호와 같음)</p> <p>②-----11인 이내-----.</p> <p>③----- 건설교통국장 ----- 치수방재과장 -----.</p> <p>④ -----.</p> <p>1. ----- 토목과장</p> <p>2.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p>

<p>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⑤----- 위원회 -----위원 회 ----- ----- ----- 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7조의2(위원의 임기) ①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안 제7조 제5항으로 신설  &lt;삭 제&gt;</p>
<p>제8조(회의) ①<u>심의회의</u>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 ③ 생략  &lt;신 설&gt;</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u>위원회</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회의 및 수당)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간사 등) ①<u>심의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u>를 간사로 둔다. ② (생 략)</p>	<p>제9조(간사 등) ①<u>위원회</u> ----- ----- <u>재난관리담당주사</u> ----- -----</p>	<p>제9조(간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 -----</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 -----</p>

<p>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p>	<p>-----.</p> <p>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2.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담당주사</p>	<p>-----.</p> <p>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2.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 -----40일 전까지 ----- -----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lt;삭 제&gt; (현 행)</p> <p>③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p>
<p>제13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에 의한다.</p> <p>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p>	<p>제13조(준용) 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p> <p>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p>	<p>제13조(준용)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 개정 (안 제7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향조정
  - 위원의 임기 신설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07. 2. 9 ~ 2. 28.(20일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사무”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
8.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2.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임기) ①임명된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및 수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 성과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제7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p>
<p>제2조(정의)</p> <p>1. “<u>심의회</u>”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심의회</u>”를 말한다</p> <p>2. “<u>구금고</u>”라 함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u>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p> <p>1. “<u>위원회</u>” ——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u>” ——.</p> <p>2.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u>」 ——.</p>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②구청장은 <u>기금사무</u>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p> <p>② —— <u>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용도)</p> <p>1. ~ 6 . (생략)</p> <p>7. <u>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6조(기금의 용도)</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 관련 장비구입 사업.</u></p> <p>8. <u>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u></p> <p>9. <u>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b></p> <p>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심의회</b>를 둔다.</p> <p>1.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u></p> <p>2. <u>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b>심의회</b>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b>부구청장</b>이 되고, 부위원장은 <b>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b>이 된다.</p> <p>④위원은 <u>재난과 관련 있는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8조(회의)</b> ①<b>심의회</b>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p> <p>①----- ----- <b>위원회</b> -----.</p> <p>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영의 성과분석</u></p> <p>4.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u></p> <p>5. <u>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b>위원회</b> ----- -----.</p> <p>③----- <b>행정국장</b> ----- <b>자치행정과장</b> -----.</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u>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u></p> <p>2. <u>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u></p> <p><b>제7조의2(위원의 임기)</b></p> <p>①<b>임명된</b>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b>위촉된</b>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b>위촉된</b> 위원중 <b>결원이 생겼을</b>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b>제8조(회의 및 수당)</b> ①<b>위원회</b>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간사 등) ①<u>심의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재난관리</u>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u>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u> 2. 기금출납원 - <u>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u></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50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3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u>에 의한다.</p> <p>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u>에 의한다.</p>	<p>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 ----- <u>재난관리</u> 담당주사 -----.</p> <p>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u>자치행정과장</u> 2. 기금출납원 - <u>재난관리담당주사</u></p> <p>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준용) 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u>」 -----.</p> <p>②-----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u>」 -----.</p>